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9일, 유동수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4.9.24.)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4.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유동수의원)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

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신체·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기영)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현행법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등을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은 입법취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첫째, 개정안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사태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서 이미 민방위사태의 피해수습 및 복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방위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¹⁾, 이와 별도로 민방위사태를 사회재난에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 내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둘째, 개정안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도발·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시키고 있는데,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투”, “도발”, “위협”의 정의²⁾가 ‘적의 침해 의도’를 전제로 하는 것에 반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정의는 ‘자연재해 또는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의미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민방위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2.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

2) 「통합방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란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企圖)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은희)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